

# 시보

|        |         |
|--------|---------|
| 선<br>람 | 기 관 의 장 |
|        |         |

제1056호 2019. 2. 1. (금)

|   |   |  |
|---|---|--|
|  |  |  |
| 시화-철쭉   | 시조-갈매기  | 시목-노티나무  |

## 조 례

- 삼척시 조례 제1190호 삼척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 3
- 삼척시 조례 제1191호 삼척시 관급공사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5
- 삼척시 조례 제1192호 삼척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 22
- 삼척시 조례 제1193호 삼척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4
- 삼척시 조례 제1194호 삼척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27
- 삼척시 조례 제1195호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29

## 규 칙

- 삼척시 규칙 제574호 삼척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 31

##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14호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36

##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103호 2019년도 삼척시민제안 공모 ----- 39
- 삼척시 공고 제106호 삼척시 관문 이미지 아이디어 공모 ----- 42
- 삼척시 공고 제114호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45

|        |  |  |  |  |  |  |  |  |  |
|--------|--|--|--|--|--|--|--|--|--|
| 공<br>람 |  |  |  |  |  |  |  |  |  |
|--------|--|--|--|--|--|--|--|--|--|

제207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9. 1. 15.)에서 의결된 삼척시 한국 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삼척시장

2019년 2월 1일

삼척시 조례 제1190호

### 삼척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예산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예금 잔액증명서 등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제출 받으면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07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9. 1. 15.)에서 의결된 삼척시 관급공사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삼척시장

2019년 2월 1일

삼척시 조례 제1191호

### 삼척시 관급공사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삼척시 관급공사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삼척시 관급공사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할 때, 「근로기준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따라 지역 건설근로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고용 또는 사용하고,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급공사”란 삼척시(이하 “시”라 하며,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지역 건설근로자 및 건설업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삼척시에 둔 건설업자를 말한다.
3. “지역 건설기계 대여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삼척시에 둔 건설기계 대여업자를 말한다.
4. “수급인”이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를 말한다.
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에게 공사를 하도급 받은 건설업자 및 사람을 말한다.
6. “임금(임대료) 등”이란 수급인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노무비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퇴직급여·휴업수당 등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체결하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의 임대료, 그 밖에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7. “체불임금(임대료) 등”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 지급되지 못한 비용(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등) 일체를 말한다.
8.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관리법」 관련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9.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이하 “강원대금지급e”라 한다)”이란 하도급대금의 지연 지급과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적기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할 때 수급인·하수급인·노무자 및 자재업자에게 대금을 구분해서 지급하고 각 이해 당사자들이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강원도지사가 구축·운영하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적용대상은 시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관급공사와 이와 관련된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든 관급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2억원 초과 공사
2.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초과 공사
3. 기타 공사(용역·물품 포함)는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공사(용역·물품 포함)
4. 그 밖에 시장이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① 시장은 지역 건설근로자 및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하며, 수급인은 근로자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시 소재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 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수급인은 지역경제와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상 사업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금액 기준 종합공사 10억원(기타 공사일 경우 5억원으로 한다) 이상 공사로 한다.

**제5조(수급인의 책무)** 수급인은 지역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근로자, 그 밖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해당 공사계약체결 시 별지 제2호 서식의 체불임금 방지 서약서를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준공대가(기성대가를 포함한다) 신청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건설기계사용내역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내역서를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대가를 지급 받은 즉시 그 사실을 현장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 하여야한다.

**제6조(임금 합의서 등 확인)** ① 공사감독자는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임금 합의서와 임금 청구서(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를 포함한다) 및 지급내역서 등을 확인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임금 합의서와 임금 청구서 및 지급내역서 등을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임금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① 수급인은 임금을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착공 시 별지 제5호 서식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대한 합의서(이하 “임금 합의서”라 한다)를 체결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비 구분 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은 시장과 협의하여 정한 임금 지급기일에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7호 서식부터 별지 제8호 서식의 임금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감독자는 확인한 내역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금청구서 등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급인의 임금 전용계좌로 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을 그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임금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의 개인별 계좌와 하수급인의 임금 전용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공사감독자는 해당 근로자의 임금(하수급인의 임금을 포함한다) 수령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공사감독자는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허위 청구 및 유용 등 부정한 행위가 확인된 경우 시의 계약부서 및 공사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⑦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임금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임금 지급 내역(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임금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지급내역과 수급인이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 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임금의 직접 지급 등 대책을 마련하고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8조(임금 등의 직접지급)** ① 시장은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임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급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장이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 채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있음을 수급인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표준계약서 작성 등)**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

- 1.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 2. 건설기계를 임대할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
  - 3. 하도급 계약을 할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 하도급계약
- 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계약체결 시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 작성을 권장한다.

**제10조(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확인)** ① 수급인은 시장에게 공사대금을 수령한 경우 그 날부터 15일 이내 하도급대금 등을 하수급인에게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지급일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이내에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을 시장 및 공사감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공사감독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하도급대금 지급내역을 하수급인의 수령내역과 비교하여 대금의 수령 여부를 증빙 서류(통장사본 등)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강원대금알림e의 적용 등)** ① 발주자는 제3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의 경우 강원대금알림e 또는 하도급 지킴이(이하 “강원대금알림e 등”이라 한다)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민간투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경우
- 2. 그 밖에 이해당사자의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시장이 강원대금알림e 등의 적용이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강원대금알림e 등을 적용하는 사업의 경우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건설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수급인, 하수급인, 노무자, 장비·자재업자 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의 지급에도 반드시 강원대금알림e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발주된 사업을 계약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강원대금알림e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발주자·수급인·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임대료, 자재대금 등이 기한 내에 지급되도록 강원대금알림e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관계의 적정성 확보 등)** ① 시장은 하도급계약 시 하수급인의 시공능력이 부족하거나 하도급계약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장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서를 접수·검토하여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건설공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신고센터 운영)** ① 시장은 지역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의 고용 또는 사용 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체불임금(임대료) 발생 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 및 지방노동(지)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4조(자료 제출)**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관계법규의 준수)** 시장은 제3조의 공사를 시행하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관계법규 준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할 경우 즉각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계약특수조건 반영)** 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 동 협 약 서**(제4조 관련)

「○○○ 공사」와 관련하여 삼척시와 수급자(시공사)는 금번 공사를 착공, 시공함에 있어 지역 건설업체를 비롯한 지역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동협약사항을 마련하고 함께 노력한다.

다 음

1. 시공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하여 시공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에 소재한 건설 및 공사업체를 우선적으로 참여시킨다.
2. 시공사는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장비·인력 등에 대해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거나 활용하도록 한다.
3. 시공사는 위의 하도급을 포함한 지역업체의 공사참여와 자재 등 사용 비율이 최소한 50% 이상이 되도록 업체 자율적으로 정하고 이를 실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4. 시공사는 공사일반조건에 따라 공사에 참여하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대금과 자재·장비·인력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금은 발주자인 삼척시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일체 체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5. 삼척시는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준공될 수 있도록 시공사에 필요한 모든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아니한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직인)

수급자(시공사) : 대표 (인)

[별지 제2호 서식]

### 임금 및 하도급 대금 지불 서약서(제5조제2호 관련)

우리 업체에서는 삼척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포함)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삼척시 정책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건설공사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임대료를 포함한다)과 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삼척시(발주처)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서약자

- 업체명 :
- 주소 :
- 대표자 : (인)
- 연락처 :

**삼척시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

- 사업명 :
- 공사기간 :
- 업체명 :
- 사용내역 :

(단위:원)

| 건설기계 소유자 |    | 사용<br>일수 | 단가 | 임대료 | 본인<br>확인(인) | 연락처<br>(휴대폰) |
|----------|----|----------|----|-----|-------------|--------------|
| 성명       | 주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공사(용역)를 시행하면서 위와 같이 건설기계를 사용하였음을 확인 합니다.

년 월 일

○ 서약자

- 업체명 :
- 주소 :
- 대표자 : (인)
- 연락처 :

**삼척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 공사근로자 노무비
- 건설기계 임대료

### 지급 내역서

○ 공사명 :

| 계약상대자 | 해당 월 | 구분 | 근로자 또는 소유자 성명 | 지급액 | 계좌번호 | 전화번호 | 지급일자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하도급사1 | 해당 월 |    | 근로자 또는 소유자 성명 | 지급액 | 계좌번호 | 전화번호 | 지급일자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하도급사2 | 해당 월 |    | 근로자 또는 소유자 성명 | 지급액 | 계좌번호 | 전화번호 | 지급일자 |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합계    |      |    |               |     |      |      |      |    |

- ※ 1. 구 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3.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공사감독 (인)

[별지 제5호 서식]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 공 사 명 |                       |                             |
|-------|-----------------------|-----------------------------|
| 계약상대자 | 상호 및 대표자              |                             |
|       | 영업소 소재지               |                             |
| 하수급인  | 상호 및 대표자              |                             |
|       | 하도급 공종                |                             |
|       | 업종 및 등록번호             |                             |
|       | 영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하도급내용 | 공 종                   |                             |
|       | 하도급내용                 | 도 급 액 :<br>하도급액 :<br>하도급율 : |
|       | 하도급계약상의 직접 노무비 또는 노무비 |                             |

위 시설공사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청구일  | 지급기일 | 은행명 | 계좌번호    | 비고   |
|------|------|-----|---------|------|
| 매월 일 | 매월 일 |     | 통장사본 참조 | 수급인  |
|      |      |     | "       | 하수급인 |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삼척시 관공공사 지역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공사 및 지급범위) 발주기관과 본 합의서를 작성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급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 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 : 삼척시 경리관 (인)

계약상대자 : ○○○(주) 대표 (인)

하수급인 : ○○○(주) 대표 (인)

[별지 제6호 서식]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서

|         |   |
|---------|---|
| 공사명     |   |
| 계약금액    | 금 원(금 원)  |
|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
|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
| 준공예정일   | 년 월 일   |
| 직접노무비총액 | 금 원(금 원)  |
| 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li> <li>- 일용근로자를 필요시마다 인력회사 등을 활용하여 현금 지급( )</li> <li>-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li> </ul> </li> <li>▶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수급인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li> <li>- 기타사유( )</li> </ul> </li> </ul> |

위 공사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사유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에 노무비 지급확인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공사기간 중 공사근로자에 대한 노무비 체불 및 관련 민원 등이 발생 시 즉시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노무비 체불, 허위 서류 제출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의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 등의 행정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 상용근로자 현황, 직접시공계획 통보서, 근로자 참여현황, 국민건강보험가입증명서 등 첨부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하수급인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공사감독자 : (인)

삼척시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체불임금(임대료) 신고서**

|                 |     |            |     |     |
|-----------------|-----|------------|-----|-----|
| 신고자             | 성명  |            | 연락처 | ☎ : |
|                 | 주소  | 휴대폰 :      |     |     |
| 신고방법            |     | 서면신고/ 전화신고 |     |     |
| 체불임금사업장         | 업체명 |            |     |     |
|                 | 주소  |            |     |     |
| 신고 내용<br>(상담내용) |     |            |     |     |

※ 건설기계 임대료의 체불일 경우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사업장을 기재한다.

제207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9. 1. 15.)에서 의결된 삼척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9년 2월 1일

삼척시 조례 제1192호(의원 발의)

**삼척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인적 피해 등을 입은 삼척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삼척시민을 대상으로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시장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과 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① 시장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료 납입방법)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재난의 피해자는 보험기관에 직접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보험기관은 보상금액을 보험증권과 보험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의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신청)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한 경우
-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
-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07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9. 1. 15.)에서 의결된 삼척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삼척시장**

2019년 2월 1일

삼척시 조례 제1193호(의원 발의)

**삼척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교류협력 및 해당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시민화합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교류협력”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 및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시가 추진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의 우호교류, 자매결연을 모두 포함한다.
- 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 체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협약서,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 3.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실시하는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내·외 도시와 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결연의 종류) 교류협력은 우호교류 또는 자매결연으로 한다.

제5조(사전검토)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거나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구, 면적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
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성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6조(사전 교류협력) 교류협력 체결 전에 민간단체 대표, 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하여 우리시와 대상 지역의 여건을 비교하는 등의 실지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방의회의 교류협력) 의회는 시가 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교류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8조(교류협력의 취소) 우호교류 또는 자매결연 후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읍면동의 교류협력 등) ① 읍면동장이 교류협력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도시의 읍면동과 우선하여 추진한다.  
② 읍면동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은 시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10조(경비의 지원) ① 시와 의회는 사전 교류협력 및 교류협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② 읍면동장은 읍면동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해당 읍면동 예산에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류협력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207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9. 1. 15.)에서 의결된 삼척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삼척시장

2019년 2월 1일

삼척시 조례 제1194호(의원 발의)

### 삼척시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mu\text{m}$ ) 이하인 먼지
  -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mu\text{m}$ )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의 노인 등을 말한다.
4. “특정경유자동차”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 규정에 따른 조기폐차 권장 대상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항만과 시멘트 공장,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수한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시설 및 기업 등이 환경개선 투자를 확대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시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삼척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의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오염에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대기측정망 설치·운영
2.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
3. 노후경유차의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조기폐차비
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07회 삼척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9. 1. 15.)에서 의결된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삼척시장

2019년 2월 1일

삼척시 조례 제1195호(의원발의)

##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삼척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180만6천원을”을 “별표1의 지급기준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별표1”을 “별표 2”로,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제2호 별표 5에 따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별지]

### 【별 표1】

####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2조 제2항 관련)

| 기준년도  | 연 월정수당                                      |
|-------|---|
| 2019년 | 금26,600,000원으로 한다                           |
| 2020년 |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적용한다. |
| 2021년 | 2020년 월정수당에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적용한다. |
| 2022년 |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적용한다. |

※연 월정수당은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한다.

### 【별 표2】

#### 삼척시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기준(제4조제2항 관련)

(단위:원)

| 철도운임       | 선박운임        | 항공운임 | 자동차운임 | 현지교통비<br>(1일당) | 숙박비<br>(1일당)  | 식비<br>(1일당) |
|------------|-------------|------|-------|----------------|---|-------------|
| 실비<br>(특실) | 실비<br>(1등급) | 실비   | 실비    | 20,000         | 실비<br>(상한액: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 25,000      |

비고 : 삼척시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 당일 출퇴근이 곤란한 원격지(육로 편도 60킬로미터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의원이 회기중 회의에 출석하여 숙박하게 되는 경우에는 교통비(현지교통비는 제외한다), 숙박비 및 식비(기준 식비의 3분의 1을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삼척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삼척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삼척시장

2019년 2월 1일

삼척시 규칙 제574호

### 삼척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삼척시 재무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3조제3항 본문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로 한다.

제55조제4항 본문 중 “별표 2”를 “별표 3”으로 하고, 같은 항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를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 4)”로 한다.

제85조제1항 중 “별표 4”를 “별표 5”로 한다.

제15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원본을 보관하되, 전자적 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로 하고, 별표 1 및 별표 2는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3조제1항 관련)

| 관 직 명                  | 본 청   | 시의회         | 제1관서  |
|------------------------|---|-------------|---|
| 회 계 책 입 관              | 자치행정국장  | -           | -   |
| 징 수 관                  | 자치행정국장  | 사무과장        | 관서의 장<br>단,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는<br>경제건설국장으로 함   |
| 분 임 징 수 관              | 세무과장,<br>세외수입 주관 및<br>특별회계담당실·과장                      | -           | 세입업무담당과장<br>단,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는<br>소장으로 함  |
| 재 무 관                  | 자치행정국장  | 사무과장        | 관서의 장<br>(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br>단,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는<br>경제건설국장으로 함<br>(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소장이<br>분임재무관)  |
| 분 임 재 무 관              | 회계과장,<br>각 실·과장<br>(일상경비 중에서<br>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           | 회계담당과장<br>(본청 일상경비의 경우<br>일상경비출납원)<br>단,상수도사업소,하수도사업소는<br>소장으로 함<br>(본청 일상경비의 경우<br>서무담당장이 일상경비출납원),<br>각 과장<br>(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br>해당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
| 총 관 채 권 관 리 관          | 자치행정국장  | -           | -   |
| 채 권 관 리 관              | 소관 실·과장   | 사무과장        | 관서의 장   |
| 총 관 부 채 관 리 관          | 기획감사실장  | -           | -   |
| 부 채 관 리 관              | 소관 실·과장   | 사무과장        | 관서의 장   |
| 기 금 총 관 관 리 관          | 기획감사실장  | -           | -   |
| 통 합 지 출 관              | 회계과장  | -           | -   |
| 지 출 원                  | 재무(지출)업무담당  | 의사담당        | 재무(지출)업무담당  |
| 수 입 금 출 납 원            | 세외수입 및 징수업무담당,<br>세외수입주관 업무담당,<br>특별회계 세입업무담당         | 의사담당        | 세입업무담당  |
| 일 상 경 비 출 납 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  |
| 세 입 세 출 외<br>현 금 출 납 원 | 재무(지출)업무담당자   | 재무(지출)업무담당자 | 재무(지출)업무담당자   |
|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             |   |

| 관 직 명                  | 기타관서·임시관서   | 읍·면·동   | 읍·면의 출장소<br>(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
|------------------------|---|---|---------------------------------|
| 회 계 책 입 관              | -   | -   | -                               |
| 징 수 관                  | 관서의 장   | 읍·면·동장  | -                               |
| 분 임 징 수 관              | -   | -   | -                               |
| 재 무 관                  | -   | 읍·면·동장<br>(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br>분임재무관)                               | -                               |
| 분 임 재 무 관              | 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 -   | 소장                              |
| 총 관 채 권 관 리 관          | -   | -   | -                               |
| 채 권 관 리 관              | 관서의 장   | 읍·면·동장  | -                               |
| 총 관 부 채 관 리 관          | -   | -   | -                               |
| 부 채 관 리 관              | -   | -   | -                               |
| 기 금 총 관 관 리 관          | -   | -   | -                               |
| 통 합 지 출 관              | -   | -   | -                               |
| 지 출 원                  | -   | 읍·면·동의 지출업무담당<br>(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br>일상경비출납원)                      | -                               |
| 수 입 금 출 납 원            | 세입업무담당  | 세입업무담당  | -                               |
| 일 상 경 비 출 납 원          | 서무담당과장,<br>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br>재무업무 담당 또는<br>서무업무담당(자)   | 지출원이나<br>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br>공무원(다른 기관에서<br>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br>한함) | 재무(지출)업무담당(자)                   |
| 세 입 세 출 외<br>현 금 출 납 원 | 서무업무담당(자)   | 서무업무담당자   | 서무업무담당(자)                       |
|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   |                                 |

&lt;별표 2&gt;

##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 제 1 관 서   | 기 타 관 서            |
|---|--------------------|
| 농업기술센터<br>보 건 소<br>상수도사업소<br>하수도사업소<br>수산자원센터<br>문화예술센터<br>대이동굴관광센터<br>해양관광센터 | 도계보건출장소<br>원덕보건출장소 |

삼척시 고시 제2019 - 14호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24조,제25조에 의거  
우리시 건물등의 신축(말소) 등의 사유로 부여(폐지)하는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2. 1.

삼척시장

○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4306-36(갈천동) 외 12건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    | 도로명 |      | 비 고 |
|--------|-------|-----|----|-----|------|-----|
|        | 주소    | 고시일 | 사유 | 고시일 | 부여사유 |     |
| (별지참조) |       |     |    |     |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민원봉사과(☎570-3946~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  
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2. 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폐지) 고시

| 순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      | 도로명      |                           | 비고 |
|----|------------------------|----------------------------|----------|------|----------|---------------------------|----|
|    |                        | 주소                         | 고시일      | 사유   | 고시일      | 부여 사유                     |    |
| 1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1길 12    | 폐지                         | 20190201 | 건물철거 | 20090626 |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교가길분기)   |    |
| 2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사곡길 340    | 폐지                         | 20190201 | 건물철거 | 20090626 | 행정구역명 사용                  |    |
| 3  | 강원도 삼척시 갈천동 93-1       |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4306-36 (갈천동) | 20190201 | 건물신축 | 20090710 | 동해를 연결하는 주요도로             |    |
| 4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58-1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030       | 20190201 | 건물신축 | 20090626 |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 기존 도로명활용     |    |
| 5  | 강원도 삼척시 갈천동 138-3      |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622 (갈천동)    | 20190201 | 건물신축 | 20090626 | 동지역해안도로 (기존도로명)           |    |
| 6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365-1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길 16-4      | 20190201 | 건물신축 | 20090626 |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교가길분기)   |    |
| 7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점리 136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누구점리3길 26      | 20190201 | 건물신축 | 20090626 |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누구점리길분기) |    |
| 8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점리 146-1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누구점리3길 62      | 20190201 | 건물신축 | 20090626 |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누구점리길분기) |    |
| 9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1321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사곡길 344        | 20190201 | 건물신축 | 20090626 | 행정구역명사용                   |    |
| 10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 349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안길 200      | 20190201 | 건물신축 | 20090626 | 행정구역, 지역 위치부합활용           |    |
| 11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365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심방금계길 201-19   | 20190201 | 건물신축 | 20090626 | 지역지명(심방금계)복합 활용           |    |
| 12 |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633-14 |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안길 37        | 20190201 | 건물신축 | 20090626 | 행정구역, 지역 지명(안마을) 명칭활용     |    |
| 13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549-3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길 101-272   | 20190201 | 건물신축 | 20090626 | 행정구역명사용 (경지정리지역)          |    |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내역

| 구분 | 순번 | 종전주소                   |        | 도로명주소                      |         | 고시일      | 사유   | 도로명고시일   | 비고                                  |
|----|----|------------------------|--------|----------------------------|---------|----------|------|----------|-------------------------------------|
|    |    | 계                      | 개      | 계                          | 개       |          |      |          |                                     |
| 폐지 | 1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길 12    | 12     | 폐지                         | 13      | 20190201 | 건물철거 | 20090626 | 도로명 부여사유<br>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교가길분기) |
| 폐지 | 2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사곡길 340    | 340    | 폐지                         | 340     | 20190201 | 건물철거 | 20090626 | 행정구역명사용                             |
| 부여 | 3  | 강원도 삼척시 갈천동 93-1       | 93-1   | 강원도 삼척시 동해대로 4306-36 (갈천동) | 4306-36 | 20190201 | 건물신축 | 20090710 | 동해를 연결하는 주요도로                       |
| 부여 | 4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 58-1   | 58-1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삼척로 2030       | 2030    | 20190201 | 건물신축 | 20090626 | 구7번국도연결 구간으로 기존 도로명활용               |
| 부여 | 5  | 강원도 삼척시 갈천동 138-3      | 138-3  | 강원도 삼척시 새천년도로 622 (갈천동)    | 622     | 20190201 | 건물신축 | 20090626 | 동지역해안도로(기존도로명)                      |
| 부여 | 6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 365-1  | 365-1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교가리길 16-4      | 16-4    | 20190201 | 건물신축 | 20090626 |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교가길분기)             |
| 부여 | 7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점리 136     | 136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누구점리3길 26      | 26      | 20190201 | 건물신축 | 20090626 |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누구점리길분기)           |
| 부여 | 8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점리 146-1   | 146-1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누구점리3길 62      | 62      | 20190201 | 건물신축 | 20090626 | 일련번호방식, 행정구역명사용 (누구점리길분기)           |
| 부여 | 9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산양리 1321   | 1321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사곡길 344        | 344     | 20190201 | 건물신축 | 20090626 | 행정구역명사용                             |
| 부여 | 10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 349    | 349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삼거리안길 200      | 200     | 20190201 | 건물신축 | 20090626 | 행정구역, 지역위치부합활용                      |
| 부여 | 11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상맹방리 365   | 365    | 강원도 삼척시 근덕면 심방금계길 201-19   | 201-19  | 20190201 | 건물신축 | 20090626 | 지역지명(심방금계)복합 활용                     |
| 부여 | 12 |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 633-14 | 633-14 |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안길 37        | 37      | 20190201 | 건물신축 | 20090626 | 행정구역, 지역지명(안마을) 명칭활용                |
| 부여 | 13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리 549-3 | 549-3  |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하거노길 101-272   | 101-272 | 20190201 | 건물신축 | 20090626 | 행정구역명사용 (경지정리지역)                    |



|               |                     |
|---------------|---------------------|
| ① 제안제목        |                     |
| ② 제안종류        |                     |
| ③ 개요          |                     |
| ④ 현황 및 문제점    |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가능 |
|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가능 |
|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 | 기재내용이 많을 시 별지 작성 가능 |

< 작성요령 >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 ② 제안종류 : 자유제안, 지정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개선방법을 기술함
-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삼척시 공고 제2019 - 106호

#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관광도시 관문 이미지 아이디어 공모

2019년 1월 31일

## 삼척시 장

### 삼척시 관문 이미지 아이디어 공모

삼척 시가지 내 철도가도교, 도로 육교 등을 관문 이미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독특하고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직접 제안해 주십시오.

✓ 2019. 01. 31.(목) ~ 2019. 03. 07.(목)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관광도시 관문 이미지 조성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 합니다.

- \* 우수제안자에게는 표창 및 부상금 지급
- \* 동일한 내용은 우선 접수된 제안을 수상자로 결정하며, 시상규모 및 부상금은 변경될 수 있음.

#### □ 응모자격은

- ✓ 제한없음 (개인 또는 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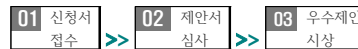
#### □ 공모 주제는

- ✓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관광도시 관문이미지 조성!

#### □ 제안 분야는

- ✓ 철도 가도교, 컨베이어 벨트, 육교 등 활용 "삼척" 이미지 연출분야
- ✓ 족서루, 삼척읍성 등 도시의 관문 이미지 연계 가능 디자인분야

#### □ 제안 접수 및 심사절차



- 제출기관 : 삼척시청 (전략사업실)

#### ✓ 제안 신청 (제안서 첨부)

- 우 편 :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전략사업실(033-570-4046)

\* 2019.03.07.(목) 18:00 접수시 유효(우편은 소인 날인분)

- F A X : (033) 570-3186
- E-mail : kthwan9@korea.kr
- 방 문 : 삼척시청 전략사업실 도시재생팀

※ 최대 2개까지 가능, 제안서 제출 후 반드시 확인 전화 요망

- 심사기관 : 전문가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

#### 1단계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후 이메일 또는 우편 및 방문접수

#### 2단계 제안서 심사

- 시관계자,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로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기준 : 디자인 적합성, 실현가능성, 사업비 평가
  - ☞ 디자인(설계)의 독창성, 우수성, 예술성, 안정성, 기능성
  - ☞ 주변경관과 조화성 및 실현가능성, 설계 및 추정 사업비 검토

#### 3단계 시상

- 심사발표 : 2019.03월말 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시상구분

| 전체            | 대상            | 우수상               | 장려상               |
|---------------|---------------|-------------------|-------------------|
| 8명<br>(300만원) | 1명<br>(100만원) | 2명<br>(각<br>50만원) | 5명<br>(각<br>20만원) |

\* 시상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시상하지 않을 수 있음.

#### □ 아래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일반적 공시, 이미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창권 등을 취득하였거나 계류 중인 것
- 이미 채택된 제안과 그 기본구상이 유사한 것
- 일반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건의, 불만의 표시
- 연구비 등을 보조받아 산출된 연구 결과물
- 기업 및 개인의 특정제품, 사업홍보와 관련된 것 등

- ✓ **공인 제안서만 인정**하며, 신청서 제출된 제안에 대한 제안권만 삼척시에 귀속
- ✓ **제안서의 지적 등의 기타 불합당 방법의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으며, 시는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삼척시청 전략사업실(☎033-570-40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양식》

## 삼척시 관문이미지 아이디어 응모 신청서

|                       |        |         |      |       |  |  |  |
|-----------------------|--------|---------|------|-------|--|--|--|
| 접수번호                  |        |         |      | 접수일   |  |  |  |
| 참가자<br>인적사항<br>(대표자)  | 성명     | (서명)    | 생년월일 |       |  |  |  |
|                       | 주소     | 우편번호( ) |      |       |  |  |  |
|                       | 전화번호   |         |      | 휴대폰번호 |  |  |  |
|                       | E-mail |         |      |       |  |  |  |
| 제안명<br>(명칭)           |        |         |      |       |  |  |  |
| 구상내용<br>(간략히<br>설명 등) |        |         |      |       |  |  |  |
| 모형도<br>(스케치)          |        |         |      |       |  |  |  |

응모요강을 준수하고 참가자(본인 또는 공동)의 인적사항 등의 개인정보 공개에 동의하며 응모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삼척시장** 귀하

## 신청서 뒷면

## 응모 신청서 유의사항

- ① 제출된 응모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② 작품접수시 제출된 응모작의 모든 자료에 대한 가공, 온·오프라인 상의 출판, 전시, 배포에 대한 권한을 행사 삼척시장에게 위임하는 것에 대해 작품제출자(원저작권자)가 사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③ 심사 제외 또는 시상 취소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과도한 예산수반과 설계반영이 어렵거나 실현가능성이 불가한 작품
  - ▶ 표절 아이디어 또는 국내·외 공모전에서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작품
  - ▶ 기타 지적재산권 등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 ④ 작품 접수 이후에는 접수 취소가 불가하며, 제출도서 및 서류상 변동 사항이 발생하거나 주최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관련한 근거서류 및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⑤ 접수 작품이 공모전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적합한 당선작이 없을 경우, 당선인원이 조정되거나 당선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삼척시 공고 제 2019-114호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1일

삼척시장

##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사유

- 가. 상품권 이용 불편해소 및 관광지 입장료 중 일부를 삼척사랑상품권으로 환급이 용이하도록 상품권 발행 종류 확대  
- 권면가액 1천원권 추가 발행(기존 3종 ⇒ 4종으로 확대)
- 나. 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 근거 명문화  
- 상품권 사용자의 불편해소 및 민원발생 사전 방지

### 2. 주요내용

- 가. 삼척사랑상품권의 종류에 권면가액 1천원권 추가(안 제2조)  
- 1천원권,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 나. 상품권 가맹점의 준수사항에 현금영수증 발급 근거 신설(안 제5조)  
- 상품권 사용자가 원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근거 명문화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 시행규칙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9년 2월 20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장(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의견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일자리경제과
  - 전화 : 033-570-3367
  - 팩스 : 033-570-3140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홈페이지(<http://samcheok.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친구조문대비표 1부.  
3.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

삼척시 규칙 제 호

###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에 따라”로, “5천원권”을 “1천원권, 5천원권”으로, “3종류”를 “4종류”로 한다.

제5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상품권 사용자가 원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것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상품권의 종류)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삼척사랑상품권(이하"상품권"이라 한다)은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3종류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2조(상품권의 종류) -----<br>----- 제4조에 따라 -----<br>----- 1천원권, 5천원권 -----<br>- 4종류-----<br>-----. |
| 제5조(사용점의 준수사항) 상품권을 거래대금 결제수단으로 취급하는 가맹점은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br><br>1. ~ 4. (생략)   | 제5조(사용점의 준수사항) -----<br>-----<br>-----.<br><br>1. ~ 4. (현행과 같음)                             |
| <신설>   | 5. 상품권 사용자가 원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것  |



## 입법예고안 검토의견서

▣ 조 례 명 :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일부개정 시행규칙안

▣ 의견제출자 :

| 제 정 안 | 검 토 의 건 |      |
|-------|---------|------|
|       | 수정안     | 검토사유 |
|       |         |      |